

비 고	No	No	(과태료·범칙금)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
	1. 위반일시 년 월 일 2. 위반장소: 3. 등록번호: 4. 적용법조: 5. 보관장소: 6. 취 급 자: 소 속 : 성 명 :	○귀하의 차량은 주차위반으로 「도로교통법」(제156조·제160조 및 제161조)에 따라 (과태료·범칙금)이 부과되며,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견인대상차량입니다. ○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경찰서 교통계 (구청 지역교통과) (전화: -)에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. 차량 소유자 귀하 년 월 일 경찰서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

←10cm→ ←20cm→
300mm×150mm(일반용지 60g/m²)